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한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9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한 · 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김용일, 김지향,
김형재, 남창진, 박승진,
박영한, 박철성, 서상열,
서준오, 신복자, 유정인,
윤종복, 이상욱, 이영실,
이용균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
최민규, 허 · 훈, 홍국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지설비, 소화 설비, 방화설비 등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.(안 제7조의6 신설)

3. 참고사항
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6(충전시설 화재예방) 시장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지설비, 소화설비, 방화설비 등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조의6(충전시설 화재예방) 시장</u> <u>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시</u> <u>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지</u> <u>설비, 소화설비, 방화설비 등의 화</u> <u>재안전시설을 설치를 지원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